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안)

(한국보험계리사회, '25.12.31.)

- (개요) 계리사회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외부검증기관의 검증업무 품질 제고 등을 위해 감독원 주관 하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2023년 6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검증기관의 실제 IFRS17 준비금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2차 개정안을 마련함

* 가이드라인 총론 제3조(운영) 본회는 매년 검증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가이드라인 2차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IFRS17 준비금 검증 실무 사례 반영
 - ② 표준검증시간·품질관리 핵심지표 현실화
 - ③ 관계법령, 규정 등의 개정사항 반영 등

- (작업반) 실제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인 외부검증기관 주도로 2차 개정안 마련(세부 명단은 붙임 1 참고)

- (일정) 작업반 구성 및 운영(25.03~25.10) → 2차 개정 초안 마련(25.11) → 업계·당국 의견 수렴 및 반영(~26.01.14) → 최종 개정안 마련 및 계리실무기준원 의결(26.01)

- 이번 2차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6년도 신규 계약부터 적용 권고

1. 배경 및 문제점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은 계리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수행 과정에서 검증업무를 총괄하는 자(PM)가 계리사가 아닌 경우가 일부 존재
 - 이 경우, 책임준비금의 복잡한 산출 구조 및 계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 검증 결과의 신뢰성·적정성 부족, 검증 의견의 일관성 미흡, 대외 설명력·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품질관리 핵심지표 부분도 2개년 간의 공시 경과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2. 개선 방향

- 책임준비금 검증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차원에서 검증업무 책임자는 계리사(5년 이상 경력 및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지정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검증업무 책임자는 0.2M/M 이상 검증업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검증업무 전 과정에 대한 총괄 및 관리 책임 부여
 - 이를 통해 외부검증의 품질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검증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품질관리 핵심지표 표준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을 일부 수정·보완

3. 개정 건의(안)

① 총론 수정: 검증의 적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증업무 책임자(5년 이상의 경력 및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계리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0.2 M/M 이상 직접 검증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신설

현 행	개 선 (안)
<p>제4조(검증) ①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산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검증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한 회사의 상품 검증업무 등에 참여한 검증인력은 그 회사의 준비금 검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한다)2. 검증 계획 및 검증 절차 수립3. 검증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4. 검증보고서의 작성 등 검증업무의 관리5. 검증결과의 보고기준 <p>(신설)</p>	<p>제4조(검증) ①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산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검증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한 회사의 상품 검증업무 등에 참여한 검증인력은 그 회사의 준비금 검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한다)2. 검증 계획 및 검증 절차 수립3. 검증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4. 검증보고서의 작성 등 검증업무의 관리5. 검증결과의 보고기준 <p><u>③ 외부검증기관이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증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를 검증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업무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최근 5년 이내에 「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제1호(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자 <p><u>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업무 책임자는</u></p>

<p>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증 계획 및 절차는 실무매뉴얼의 ‘단계별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 목록’ 및 ‘책임준비금 검증프로세스’ 등을 적절히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해당 검증업무에 대하여 0.2M/M(Man-Month) 이상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검증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 및 관리 책임을 진다.</p> <p>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증 계획 및 절차는 실무매뉴얼의 ‘단계별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 목록’ 및 ‘책임준비금 검증프로세스’ 등을 적절히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	--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수정: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에 해당 검증업무를 총괄한 검증업무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수정

현 행

3. 검증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검증시간

(단위 : 명, 시간)

인원수 및 시간	검증참여자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보험계리사		非 보험계리사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투입시간	최적가정								
	최초검증								
	결산검증								
	결산검증(기타)								
	합계								

개 선 (안)

3. 검증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검증시간

검증업무 책임자	
계리사등록번호	

(단위 : 명, 시간)

인원수 및 시간	검증참여자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보험계리사		非 보험계리사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투입시간	최적가정								
	최초검증								
	결산검증								
	결산검증(기타)								
	합계								

[3] 품질관리 핵심지표 수정: 외부검증기관이 매년 제출하는 품질관리 핵심 지표 검증업무 부분에 각 업무를 총괄한 책임계리사를 명시하도록 수정

- 추가로 각 구분별 검증시간 및 검증인력 항목을 추가하여 핵심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제고

현 행			
2-2. 검증업무 수행건수			
연번	구분	회사명	검증의견
1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	OO 손해보험	적정 / 한정 / 부적정
2			
3			
4			
5			
:			

개 선 (안)

연번	구분	회사명	검증의견	검증업무 책임자	검증시간	검증인력
1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	OO 손해보 험	적정 / 한정 / 부적정	홍길동	(검증보고서 기준)	(평균 검증인력 수)
2						
3						
4						
5						
:						

1. 배경 및 문제점

- IFRS17 도입에 따라 2023년 6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표준검증시간이 제정되어 자율규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외부검증기관의 2023~24년의 실제 검증시간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표준검증시간 대비 실제검증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사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짐
 - 외부검증기관에서는 제한된 검증시간으로 인해 외부검증의 품질 확보 및 적정성 검토의 깊이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
- 이에 실제 수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검증시간을 현실화하고, 보험사별 특성과 검증 난이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실제 검증시간 분석

11개의 외부검증기관*의 2023~2024년 검증보고서 및 실제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표준검증시간 대비 실제 검증시간이 적정한지를 분석함

* 글래스, 더맵, 삼정, 서울, 선금융, 써미트, 우리, 프라임, 한국계리, GS, SIG

구분	최초검증				계속검증			
	평균	중앙값	최저	최고	평균	중앙값	최저	최고
가군	92.7%	88.7%	58.9%	134.3%	102.5%	97.6%	74.2%	146.9%
나군	88.2%	87.9%	63.2%	110.1%	103.3%	106.9%	81.7%	114.0%
다군	87.9%	94.4%	53.3%	125.1%	92.9%	89.6%	78.0%	111.0%
라군	112.0%	112.0%	102.1%	120.0%	166.4%	161.4%	128.6%	214.3%
평균	95.2%	96.0%	69.4%	122.3%	116.3%	113.9%	90.6%	146.5%

* 각 항목은 표준검증시간 대비 실제 검증시간의 비율(%)을 의미

(예: 80% → 실제검증시간이 표준검증시간의 80% 수준)

→ 표준검증시간과 비교하여 최초검증은 적정 수준 내에서 실제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속검증의 경우 다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실제 검증시간이 초과됨

- 특히, 소형사(라군)는 현행 표준검증시간을 초과하는 경향이 뚜렷 하며, 계속검증 시 시간 부족 현상이 심화됨
- 동일 자산군 내에서도 보험영역(종합 vs 단종, 복합채널 vs CM채널 등)에 따라 수행시간 차이가 존재

3. 개정 건의(안)

외부검증기관의 2개년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으나 표본이 부족하여 표준 검증시간 상향 논의에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우선 최소 권고수준(80%→90%) 상향과 자산군별 조정을 중심으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① 최소검증시간 상향(현행 표준검증시간의 80% 이상 → 90% 이상)

- 2023~2024년 외부검증기관의 실제 최초·계속 검증시간이 각각 표준검증시간 대비 평균 95.2%, 116.3% 수준이며, 자산군별로도 90% 수준을 검증하고 있음

현 행	개 선 (안)
<p>2. 표준검증시간</p> <p>② '①의 표준검증시간'을 기반으로 한 자산 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중략)</p> <p>① 최초검증 시, 차등기준 (중략)</p> <p>◦ 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u>80% 수준</u>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p>	<p>2. 표준검증시간</p> <p>② '①의 표준검증시간'을 기반으로 한 자산 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중략)</p> <p>① 최초검증 시, 차등기준 (중략)</p> <p>◦ 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u>90% 수준</u>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p>

<p>② 계속검증 시, 차등기준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u>80% 수준</u>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 	<p>② 계속검증 시, 차등기준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u>90% 수준</u>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
--	--

② 자산군별 조정(현행 자산군별 가·나·다·라군 → 가·나·다군으로 조정)

- 현행 가군(20조 이상), 나군(5조 이상~20조 미만), 다군(1조 이상~5조 미만), 라군(1조 미만) 구분을 가군(同), 나군(同), 다군(5조 미만)으로 조정

현 행

2. 표준검증시간

- ② ①의 표준검증시간을 기반으로 한 자산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중략)

구분	자산규모	생략
가	20조 이상	
나	5조 이상~20조 미만	
다	1조 이상~5조 미만	
라	1조 미만	

개 선 (안)

2. 표준검증시간

- ② ①의 표준검증시간을 기반으로 한 자산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중략)

구분	자산규모	생략
가	20조 이상	
나	5조 이상~20조 미만	
다	5조 미만	

* 최초/계속 검증 시, 차등 기준에 “라”군 부분은 모두 삭제

1. 배경 및 방향

- IFRS17 도입 이후 2개년 실무 적용 과정에서 가정 산출·모델 검증·재보험 검증 등 일부 기준이 실제 검증 환경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특히 2024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정된 「계리적 가정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실무표준」과 현행 실무매뉴얼 간 정합성이 부족하고, 문서화·검증 기준의 상세성이 미흡하여 기관별 편차가 발생
- 이에 실무 일관성·적정성·문서화 강화를 목표로, 검증 기준을 정비하고 항목별 세부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2. 주요 개정 건의(안)

① 계리적 가정 관련 사항 보완

- 위험률·해약률·사업비·대출·계약자행동 등 전(全) 가정 영역에 대해 당국 실무표준과 정합성 있게 매뉴얼 정비
- 기초통계 제외·보정·조정 근거, 미래추세 반영, 모형 선택(원칙·예외모형) 등 문서화 의무 강화

② 검증 기준의 세분화 및 체크리스트 정비

- 기존 포괄적 기준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검증 요소를 체계화하고, 체크리스트는 실제 실무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체 질문 중심으로 개정

③ 재보험 검증 체계 신설·강화

- 재보험 계약집합 구분(수익성·측정시점 등) 신설 및 출재미경과보험료·손실회수요소 등 재보험 변동분석 항목 신설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산출가정(출재율·손실회수율·기대신용손실 등) 검증 범위 확대

④ 모델 및 부채 검증 부분 보완

- 현금흐름모델·보험취득현금흐름·부리이율(EIR) 매뉴얼을 실무 표준과 조직 규정에 맞춰 정합화
- 변동분석 기준 및 검증 절차(특히 생·장기·일반손해보험)를 일관되게 정리

⑤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 개정사항(2026년 적용) 반영

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비상위험준비금 관련, 2025년 12월 31일 시행) 반영

※ 전체 실무매뉴얼 개정안은 별첨의 변경대비표 전문 참고

불 임**가이드라인 2차 개정 작업반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담당영역	이메일
반장	김달수 대표	나우계리 (계리법인위원회)	총괄	dalkim72@nowactuary.com
	함승우 대표	서울계리	모델검증 (생명/장기손해)	swham@esas.co.kr
	이강복 전무	써미트	모델검증 (일반손해)	kangbok.lee@summitanc.co.kr
	최인수 선임	개발원	가정검증	insu.choi@kidi.or.kr
위원	오유창 수석	더맵계리	잔보부 (일반손해)	ycoh130@the-map.co.kr
	한성희 상무	우리계리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shhanr@naver.com
	한명진 이사	SIG계리	잔보부 (생명/장기손해)	myoungjin.han@sig-partners.com
	윤명식 이사	선계리	발사부	myyun@sunactuary.com
간사	정도희 팀장 주윤정 사원	계리사회	표준검증시간, 품질관리핵심지표 및 회의록 작성	dh.jeong@actuary.or.kr yj.joo@actuary.or.kr